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684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박성빈, 송민중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29.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8.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9. 8. 20. 접수 제210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D의 자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F는 2017. 8. 15. 03:20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삼계면 순천완주고속도로 71킬로미터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완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향하여 주행하다가 앞서 2차선을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각 차량은 사고로 인하여 정차되어 있었다.

다. 이후 H은 2017. 8. 15. 03:30경 C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위 나.항 기재 사고장소를 지나가다가 선행사고 후 2차선에 비스듬히 정차하여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로 하여금 제3-4 경추간 탈구 및 제3경추부 경수 완전 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E에게 2018. 1. 16.까지 합의금 313,691,850원과 치료비 54,108,150원 합계 367,800,000원을 지급하고, C를 비롯한 H, F, I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법원 2020가단5111188). 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 7. ‘C, H, 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가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8896), 항소심에서 2022. 5. 12.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C는 2019. 8. 20.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19. 8. 20. 접수 제210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C는 2019. 8. 20.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 관하여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광양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층레브지붕 23층 아파트

1층 714.755㎡

2층 709.545㎡

3층 1,218.38㎡

4층 1,218.38㎡

5층 1,218.38㎡

6층 1,218.38㎡

7층 1,218.38㎡

8층 1,218.38㎡

9층 1,218.38㎡

10층 1,218.38㎡

11층 1,218.38㎡

12층 1,218.38㎡

13층 1,218.38㎡

14층 1,218.38㎡

15층 1,218.38㎡

16층 1,218.38㎡

17층 1,218.38㎡

18층 1,218.38㎡

19층 1,218.38㎡

20층 1,218.38㎡

21층 1,218.38㎡

22층 1,218.38㎡

23층 1,218.38㎡

지1층 1,126.4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7층 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39.86㎡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2, 3, 4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73759.8분의 12.9984

- 끝 -

